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63 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김미애·박성민·조명희

윤상현 • 황보승희 • 정경희

백종헌ㆍ이종성ㆍ권성동

조태용 • 전주혜 • 윤주경

강대식 • 안병길 • 윤두현

김영식 • 박수영 • 전봉민

최승재 · 강민국 · 허은아

서정숙 의원(22인)

제안이유

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며,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.

하지만 최근에 신생아가 베이비박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 있음.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·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.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,272건 발생하였으며,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

의 직접적 양육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는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·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보호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킴(안 제3조).
- 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와의 상담을 위하여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기관의 장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・산

- 후 보호를 위해 산전·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,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상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임산부에 대하여 부모의 성명·본·등록기준지·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 번호,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,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정보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1항).
- 바.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,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.
- 사.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8조제2항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 3항).
- 자.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 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,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,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상담

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에 알려야 하며,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의2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실 을 상담기관의 장에 통보하도록 함(안 제9조).

- 차. 아동의 출생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,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관하도록 함(안제10조).
- 카.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으며,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,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1항).
- 타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6호 및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, 출생증서의 작성으로「입양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(안 제11조제2항).

- 파.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친생부모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(안 제11조제4항).
- 하. 친생부모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「민법」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「입양특례법」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보호출산의 철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봄(안 제12조).
- 거.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부는 「민법」 제855조제1항에 따라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, 해당 아동에 대해 친양자입양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너.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상담기관은 상담을 마친 산모에 대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더.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 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 조1항).
- 러.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다만 친생

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(안제15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,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보호출산"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 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상담기관"이란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.
 - 3. "출생증서"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친생부모 및 출생 당시 의 정보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·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게 산전·산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임산부가 스스로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 원함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건강권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보호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장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등

- 제4조(상담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)은 그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 설에 상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와의 상담을 위하여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상담기관은 상담기관에 두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④ 상담기관의 설치·운영 기준,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보호출산을 위한 상담) ①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 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 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② 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

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및 「입양특례법」의 입양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의 의사를 밝힌 임산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과
- 2.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, 그 밖의 자녀의 권리
- 3. 친생부의 권리
- 4. 보호출산 이후 입양 절차
- 5. 보호출산 이후 친생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다시 행사하기 위한 방법과 기한
- 6. 보호출산으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 출생증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과 친생모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
- 7.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구체적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3장 보호출산의 지원 등

- 제6조(산전·산후 보호시설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·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·산후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해당 시설을 보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.
 - ④ 보호시설의 설치, 지정 및 변경지정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출생증서의 작성) ① 상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임산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한다. 다만,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.
 - 1. 부모의 성명 · 본 · 등록기준지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 - 2.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
 - 3.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
 - 4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, 봉투 표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, 모의 가명, 상

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다.

- 제8조(보호출산의 지원) ①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 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,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.
 - ②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) ① 의료기관에서 보호출 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,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 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구 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알려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출생증서의 영구보존)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신고

사실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,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추가로 기재한 뒤이를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(이하 "아동권리보장원"이라 한다)에 이관한다.

-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관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2조에 따라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했을 경우에는 동 출생증서를 폐기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) ①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으며,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 다만, 친모가 입양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6호 및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작성으로 「입양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 - ③ 아동의 입양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「입양특례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제12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철회

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친생부모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한다.

- 제12조(보호출산의 철회) ① 친생부모는 「입양특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「민법」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이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.
 - ② 「입양특례법」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의 철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생부와 인지)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부는 「민법」 제855조제1항에 따라 자녀를 인지할수 있다. 다만, 해당 아동에 대해 친양자입양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4조(출산 후 보호출산의 신청) ①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상담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의 의사 표시를 확인한 이후 지체 없이 해당 산모에게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산모에 대하여 제7

조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④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, 출생증서의 영구보존, 아동의 보호, 보호출산의 철회, 친생부의 인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출생증서 열람 청구) ① 이 법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친생부모 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그 외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「입양특례 법」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16조(경비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 - 1.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된 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
 - 2.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, 제9조

제1항에 따른 아동의 출생사실 등 통보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경비

- 3. 제10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영구보관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 경비
- 제17조(비밀유지의무) 상담기관, 보호시설,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(벌칙)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9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